

第49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8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26日(火) 午後2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사랑방設置및運營等에 관한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自願奉仕團設置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사랑방設置및運營等에 관한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自願奉仕團設置條例(案)(李承魯議員 發議) 3面

(14時16分 開議)

○委員長 徐化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중 제8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사랑방設置및運營等에 관한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랑방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서울특별시성북구사랑방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議員 宋鍊 서울특별시성북구사랑방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날 우리 행

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유보했던 조례안인데 그때 당시는 자문단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사랑방으로 명칭이 좀 바뀌어서 다시 올라온 안입니다.

○宋夏星委員 그때도 사랑방이라고 했어요. 애시당초.

○委員長 徐化錫 그때는 구정자문단이라고 했죠.

○宋夏星委員 실비보상에서 회의 참석시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예산 수당범위가 어느정도 입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하루 일비 5만원정도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금년에 작년보다 바뀐것이 각종 회의에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宋夏星委員 어떤 회의든지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시민이 참석하는 회의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예. 윤홍로위원님.

○尹弘老委員 지금 제정 이유를 보면 특히 소외된 서민층여론을 수렴한다 했는데, 어떤 서민층을 지칭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均佑 소외계층이라하면 여기서 주로 구두담이라든가 주로 저소득주민,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

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로 기존 이 자생단체에 가입할 사람 외에.

○俞鎮武委員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깎인 거죠?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예산이 수당 2,100만원이고 회의운영비 945만원이 깎였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안결용위원님

○安傑瑤委員 안결용위원입니다 질의나 토론을 해야할 생각조차도 지금 본위원은 없고 있던차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성북사랑방설치및운영비에 대한 조례는 지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심의했던 예도있어서, 누누히 너무나도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터라 구구한 부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그대로 사랑방운영에 대한 얘기는 각계각층의 구두담이나 어려운 분들을 모셔가지고 전 성북구의 여론수렴이 될수가 없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지적을 하고싶고, 또 이렇게 사랑방운영을 하되 위원님들께 이런 일비를 지급해가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사안으로 지난 본예산에서도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영을 하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우리 이승로위원께서 서울특별시

○委員長 徐化錫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 지금현재 이것만가지고 얘기하세요.

○安傑瑤委員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조례로 제한을 했는데, 그런 형태의 방법으로 아무런 예산부담없이 구민들의 여론을 수령해서 구에서 구성을 살필수없지않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아닌 토론과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여쭙고싶습니다. 이것을 꼭 하셔야만 되는 사항인지 달리 개선할 방법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답변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삭감을 당초 예산심의때 관련 조례가 없다. 이래서 삭감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9월20일날 안건제출해서

심의한 것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정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공식명칭이고, 이번에는 성북사랑방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사랑방이라고 약간 바뀌었는데요, 9월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해가지고 다시 손을 봐가지고서 조례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보니까 거기에 또 다른 안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지금 복안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성북사랑방을 성북구청청취시민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모니터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단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 참여폭을 확대해가지고 구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安傑瑤委員 그렇게 운영하되 그러니까 일비 지급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하자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저희가 지난번 9월달에도 누누히 말씀드린건데 제가 회의록을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와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키다보니까 그 양반이 현장에서 밥벌이 하는 시간 까먹은 시간을 일부 보상해주자 이런 뜻에서 일비 규정을 넣은 겁니다.

○安傑瑤委員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이론이라니까요, 원리적으로 봐서 그런 분들이 성북구 각 동에서 2명씩 추천해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하루 생활에 자기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그 동에 관한 여론 수렴을 이구에 와서 대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 안되는 얘기입니다.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아니, 전체 의견을 100% 맞는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여론의 사각지대는 늘 있을 수 있고,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기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일환으로 하는것이지 그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삶을 영위하면서 하루하루 들은 것 이런 것을 와서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밑바닥의 행

정이죠.

○安傑瑤委員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의 목적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죠.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總務局長 李均佑 일당을 안주고 하는 방안과 일당을 주는 방안인데, 일당을 안주면 참여의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 사람들 책임의식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그날 자기가 회의에 나오므로 해서 자기 생업에 종사못하니깐 생업에 종사 못하는데 따른 실비를 보상해준다. 이런 차원의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高允根委員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고윤근위원님.

○高允根委員 고윤근 위원입니다. 회의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하기위해서 본위원은 지금 1항, 2항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들끼리라도 조율을 해가지고, 가령해서 이것 두개를 어떻게한다든가 또 두개 중에 하나를 우리 민선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원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간담회식으로 동료 우리 위원들과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정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만 낭비하고 안될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尹晚九委員 이 자리를 떠나지말고 정회해다가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속기 안하는 거죠?

○尹晚九委員 속기 안하고,

○企劃豫算課長 金敏九 위원님들이 지난번 예산심의

○尹晚九委員 아니 속기에 대한 결정이 안났어요.

○俞鎮武委員 정회를 해 줘야죠.

○委員長 徐化錫 미리 앞서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고윤근위원님은, 일단 이 성북사랑방조례안하고 다음에 올라올것까지 결부시켜서 얘기가 된 겁니까?

○高允根委員 우리 본위원들끼리 한번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委員長 徐化錫 좋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0分 停會)

(16時01分 續開)

○委員長 徐化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시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찬성입니까, 반대토론, 안결용위원님.

○安傑瑤委員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방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는 전구민들의 의견수렴이 될수 없다고 보고 또 그런 활동조직은 일비를 쥐가면서 운영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안결용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申宗鉉委員 안위원님 발언에 찬성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찬성하실 위원님? 찬성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방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自願奉仕團設置條例(案)(李承魯議員 發議)

(16時05分)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자원봉사단설치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한 이승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崔桂洛委員 위원장, 잠깐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1호 의안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의 행동이 너무 좀 위원들 앞에서 태도가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면 수고를 하고 내려가야지 뭘 집어던지고 말아야,

○委員長 徐化錫 보지 못해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崔桂洛委員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올린 안이 다 그대로 통과돼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성북구에 맞지 않아서 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자기네들 올린대로 안됐다고 팽개치고 말아야,

○委員長 徐化錫 보지 못해서 말은 못하겠고 사실이라면 만나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崔東煥委員 만나서 주의를 주는게 아니라, 저도 최계락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이나 통해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받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사과를 받도록 하죠. 자, 이승로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魯議員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위원회 간사 이승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화석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의 정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단 설치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자치를 형성키 위해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관변단체가 중앙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운영되었지만 이제는 우리 성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여건과 특성에 맞는 시민단체를 구성하여 성북구민에게 봉사키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북구 발전을 도모키 위한 방안이며 자원봉사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앙협의 지침이 아닌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구, 동별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단 구성을 성북구 주민이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소외됨이 없어야 할 것이며 본 자원봉사단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할 수 없도록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 자원봉사단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최고 대표기관의 구의원들이 반드시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을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徐化錫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尹晚丸委員 제3조 조직에 있어서 각 '동별 지회를 둔다'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해보니까 구의 조직이 없어요. '구는 각 동별지회를 둔다' 이것보다도 '구는 각 동분과 위원장 및 회장·총무로 구성한다' 이렇게 구의 조직의 틀을 정해줘야 되는데 조직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李承魯議員 윤만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 동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동의 분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회장님들이 구성이 돼서 구에서 연합회회장을 만드는, 지금 현재 다른 단체와 달리 중앙행정부의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崔桂洛委員 최계락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간담회시간에 이 부분은 소위원회

를 구성해서 다시 행정위원회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회의시간에 바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시간에 그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하려고 했던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시준위원님.

○朴時俊委員 주요골자 내용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과거에 많은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이끌려 다닌 것은 사실인데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시점에서 이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안되겠지마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정치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데

○李承魯議員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활동하는 것이야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 자원봉사단 명의로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곤란하죠. 그런 부분들에 엄두를 두고 항목삽입을 했습니다.

○朴時俊委員 정치적 중립성 보장한다는 것이 전문위원회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보장이 뭘로 보장한다는 겁니까?

○專門議員 宋鍊 보장한다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 자원봉사 이름으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봉사단 이름으로 누구누구 후보 절대 지지한다라고 해놓고 성북구 자원봉사단, 이렇게 프랑카드를 걸었다 했을때 그것을 그 이름으로 지지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지는 할 수 없다,

○俞鎮武委員 정치 할 사람은 나가서 해야지.

○朴時俊委員 지금 자구수정 말씀 드려도 상관 없습니까?

○委員長 徐化錫 일단은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나중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때 하죠.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중현위원님.

○申宗鉉委員 신중현 위원입니다. 성북구 자원봉사단 설치조례안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도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시간 반동안을 이 문제를 가

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뜻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여러가지 우리가 조례제정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권한이요 고유의 주장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제정법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만큼 전문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俞鎮武委員 저는 반대의사입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토론회를 소위원회 구성해서.

○金振權委員 위원장님, 유진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다음번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안작성이 돼서 다시 상정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질의·응답을 해야지 현재 이걸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서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專門議員 宋鍊 저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토론하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중요한 지침을 줘야합니다. 어떤방향으로 해달라, 몇가지는 주셔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하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 주문할 사항을 한두가지씩만 해주면 그것을 참작을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崔東煥委員 소위원회라고 하지말고요, 소위원회라고 그러면 정식으로 다시 회의를 하고 속기도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든지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委員長 徐化錫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 전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되는 그런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만,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구수정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하면서 해도 별 문제

렴하고 인품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장등의 임무) ①회장은 성북사랑방을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성북사랑방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격월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성북사랑방의 회의는 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성북구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제7조(간사와 서기) ①성북사랑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과장,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8조(관계기관등의 협조) 성북사랑방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성북사랑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설명자료

【안전명: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사랑방설치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사랑방설치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의 각종 위원회나 조직으로부터 소외된 서민층 생활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구정발전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기능은 구민여론과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구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민원사항 등을 토의하고 자문하며,
- 구성은 회장은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 정기회는 격월로 1회 소집하며, 위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 구청장은 임기전이라도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성북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사랑방설치및 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사랑방설치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조례(안)검토보고

1. 제정이유

주민들의 참여 기회 확대, 특히 소외된 서민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단 소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위임을 했기 때
문에 여러가지 자원봉사단 설치조례안에 대
한 자구수정, 보완할 것, 삭제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한 다음에 내일
오후 2시 다시, 회의시에 조례에 대한 것
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6分 散會)

○出席委員 13人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尹 弘 老	金 振 權	宋 夏 星
安 傑 珞	崔 桂 洛	俞 鎮 武
申 宗 鉉	金 壽 榮	

○參席議員

李 承 魯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

○參席公務員

總 務 局 長	李 均 佑
企 劃 豫 算 課 長	金 敏 九